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813 호

2008년 6월 20일 금요일

차 례

훈 령

○훈령 제2008- 23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3

공 고

○공고 제2008- 738호 기반시설부담금 압류등록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5

○공고 제2008- 740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6

○공고 제2008- 741호 공중위생영업소 직권폐업(신고철회) 공고 7

○공고 제2008- 742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9

○공고 제2008- 7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공고 ... 10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8년 6월 20일

남동구 훈령 제23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하
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업무담당을 간사
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2008. 3. 11 행정안전부 훈령 제9호) 제3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용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한 관용심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업무담당을 간사로 함. (제2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738호

기반시설부담금 압류등록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성 명	(주)정문엔지니어링	주민등록 번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120111- *****
주소 또는 영업소					
상 호					
서류의 명칭	부동산 압류등록 통지서				
서류의 주요내용					

위 서류를 2008년 5월 28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비 고

1. 동일인에 대하여 수건인 때에는 이를 열기할 것
2. 서류의 주요내용란에는 연도·기분·세액 등을 기입할 것
3. 납부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그 기일을 부기할 것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740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말소자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06.17 ~ 2008.07.01

2. 공고사항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 당 사 자

업종	신 고 호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일 반 음식점	간석2-235	이자카야	간석동 210-1 스카이다운주상복합 204호	염의열	590714-1*****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58조 및 동법 제64조

○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5)

- 청문일시 : 2008.07.01 (월)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위생과 위생관리담당

3. 기 타 : 청문 불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2008. 06.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741호

공중위생영업소 직권폐업(신고철회)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 영업시설물이 멸실된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폐업(신고철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1. 공고기간 : 2008. 06. 20 - 2008. 07. 3 (14일)

2. 처분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일자
1	미용업	620	강미애헤어컬렉션	강미애	구월동 1379-9	시설물 멸실	직권폐업 (신고철회)	2008.06.17
2	미용업	741	진주미용실	남은화	구월동 201-208	시설물 멸실	"	"
3	미용업	2001-11-30	까망헤어모드	정운숙	구월동 277-4	시설물 멸실	"	"
4	미용업	1024	이해진미용타운	민용인	간석동 122-1	시설물 멸실	"	"
5	미용업	469	미즈미용실	황미숙	간석동 206-8	시설물 멸실	"	"
6	미용업	2001-07-05	마법의가위미용실	이혜선	간석동 220-1	시설물 멸실	"	"
7	미용업	2001-12-14	박호준개성연출	손현숙	간석동 284-2	시설물 멸실	"	"
8	미용업	222	윤세원미용실	윤세원	간석동 285-7	시설물 멸실	"	"
9	미용업	111	열림미용실	전순	간석동 33-6	시설물 멸실	"	"
10	미용업	2006-00020	하이클래스	명연희	간석동 355-6	시설물 멸실	"	"
11	미용업	380	샬롬헤어라인	김종람	간석동 390-37	시설물 멸실	"	"
12	미용업	1066	파마나라	강은숙	간석동 39-7	시설물 멸실	"	"
13	미용업	2003-미용-57	차영진헤어테크	송명희	간석동 42-2	시설물 멸실	"	"
14	미용업	320	금호미용실	강정인	간석동 91-55	시설물 멸실	"	"
15	미용업	2007-054	민정미용실	전미숙	간석동 90-7	시설물 멸실	"	"
16	미용업	166	예인미용실	이금선	구월동 구월지구 2489-5	시설물 멸실	"	"
17	미용업	2007-025	정선아헤어프로포즈	정혜진	구월동 1102-6	시설물 멸실	"	"
18	미용업	592	장미미용실	유미희	구월동 1103-19	시설물 멸실	"	"
19	미용업	1269	유서영헤어아트	유순덕	구월동 1118-28	시설물 멸실	"	"
20	미용업	577	조현숙헤어뱅크	조현숙	구월동 1261-15	시설물 멸실	"	"

3.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4.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 남동구청을 경유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 타

본 처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남동구위생과 (☎032-45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742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8. 7. 2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8. 6. 18 ~ 2008. 7. 2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 7로5732	손두형	남구 주안동1339-38	인천지방법원 (사건98카단3591)	하원영	인천 서구 심곡동 연희1지구46블럭5롯데 공영아파트103동104호
인천 72가4089	문순식	계양구 효성동155-5 효성타임빌-302	인천지방법원 (사건2001카단11037)	오재현	인천 남동구 구월동1111-6 삼성빌딩6층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41)

2008. 6.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8-7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 월 19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조례(안)

2. 제정사유

- 도시재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신축·중축·개축·재축하는 공동주택에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 외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정(안)”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 7 월 8 일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453-2570), FAX(453-25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도시재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공동주택에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그 외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방법 (안 제4조)
- 감량기기 설치 의무 (안 제6조)
-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기기를 말한다.

제3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거나 그 양을 줄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공동주택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구청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 의무)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고자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입주가구별로 적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제6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설치가구에 한하며,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

③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이내로 하며,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량기기 지원금 신청은 구입 또는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기타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